

#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

## 폐지 조례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제출일 : 2024. 2. .

### 1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효율화하고 시설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,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, 제11조, 「하남시 감사 규칙」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법 규정의 중복이 존재함.
- 또한 정부합동감사, 경기도 감사 등 상급 기관의 중복감사로 소관부서와 시설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「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」 폐지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폐지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, 상위법인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, 제11조, 「하남시 감사 규칙」과 중복된 조례로, 감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해당시설과 소관부서의 업무가중 및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됨.

※ 【참고】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

-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, 감사계획의 수립,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※ 【참고】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10조(자체감사의 종류)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.

1. 종합감사: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·주임무 및 조직·인사·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2. 특정감사: 특정한 업무·사업·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3. 재무감사: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
4. 성과감사: 특정한 정책·사업·조직·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·능률성·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
5. 복무감사: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, 비위(非違) 사실,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

- 제11조(감사계획의 수립)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감사사항
2.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
3.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
4. 감사의 범위
5.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
6.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

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